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입법례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도 의무화하고, 하위법령 위임 규정의 문구를 정비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5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5항 중 “그 밖의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 ----- ----- ----- -----하 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개정안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③ (개정안과 같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u>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u>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u>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u>----- ----- -----.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7
----------	------

발의연월일 : 2024. 7. 1.

발 의 자 : 강선우 · 정준호 · 이재관
한병도 · 한정애 · 윤준병
서미화 · 김 윤 · 김민석
김윤덕 · 허종식 · 허 영
서삼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중양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령
위임 규정의 문구를 정비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 ----- ----- ----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u> · 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 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u> · 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u>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u> <u>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u> <u>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② <u>시장</u>----- ----- ----- -----.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 ----- -----. ④ (현행과 같음) ⑤ <u>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u> <u>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u> <u>절차 등</u>----- -----.
---	--